

외국대학 연수 및 연수 학점 인정 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19.09.16. 개정 2022.04.04. 개정 2025.10.13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학칙 제24조 1에 따라 재학기간 중 외국대학 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5.10.13.>

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, 연수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(교류대상)

교류대상은 외국의 협약대학 및 자매대학으로 한다. 다만 어학연수는 총장이 인정하는 어학연수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.

제4조 (업무관장)

외국대학 교류학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기획처에서 관장하고 학점인정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04.04.>

제5조 (기간)

교류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기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 (등록)

학생은 교류수학기간 중 매 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입하며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수강과목)

협약대학 및 자매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어학연수는 교양과목으로 한다.<개정 2019.09.16.>

제8조 (교류학생의 지원자격)

협약대학 및 자매대학에서 교류수학을 원하는 학생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본대학에서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
- ② 연수 대상국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.
- ③ 해당 대학의 요구 조건에 충족된 자.
-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.

제9조 (교류수학 신청)

교류수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계열(학과)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처에 제출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5.10.13.>

- ① 외국대학 교류수학 신청서(별지서식 제1호)
- ② 성적증명서
- ③ 재학증명서
- ④ 학부모 동의서
- ⑤ <삭제 2015.06.16.>

제10조 (선발)

교류학생의 선발은 기획처에서 주관하고 총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5.10.13.>

제11조 (교류수학 경비)

교류학생은 수학기간동안에 필요한 생활비와 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학생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<개정 2019.09.16.>

제12조 (학생지도)

교류학생의 학생지도는 해당 외국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해당 외국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3조 (학점인정)

- ① 외국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이수한 학생은 어학연수학생평가지침에 의거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학점으로 인정한다.<개정 2013.10.07.>
- ② 학점인정은 정규과정 졸업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학연수의 학점은 3학점 이내로만 인정한다.<개정 2013.10.07.>

제14조 (이수단위)

- ① 외국대학에서의 교류학생에 있어서 이수단위는 15시간이상의 강의, 30시간의 실험 및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.<개정 2019.09.16.>
- ② 어학연수는 80시간(4주)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15조 (인정기준)

- ①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점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본교의 기준에 적용한다.
- ②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한대로 인정한다.
- ③ 교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은 영문으로 표기한다.<신설 2019.09.16.>

제16조 (학점신청)

외국대학에서 교류수학 대상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전공장은 외국대학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보관한다. 단, 연수자는 성적증명서 대신 연수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06.16.>

제17조 <삭제 2015.06.16.>

제18조 (교류학생의 준수사항)

교류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- ② 해외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진다.
- ③ 자매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회수한다.

제19조 (귀국보고)

유학기간이 끝나면 교류학생은 귀국하여 귀국보고서와 외국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이수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기획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5.10.13.>

제20조 (학칙준용)

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외국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06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10.1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